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나10328(본소), 2021나20172(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임차보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6541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1,127,220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2.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127,22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2.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5,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에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제3항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 중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외의 나머지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6행의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9행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12. 2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당시 원고가 전송한 현관 비밀번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11조 제1항에 정한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지칭하므로, 피고가 2019. 12. 21. 원고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이상 이를 읽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의사표시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13행의 “손해를 입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손해를 입었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총 15,730,000원 상당의 원상회복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을 제17호증)를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14행의 “을 제3, 4, 5, 9, 10호증” 부분을 “을 제3, 4, 5, 9, 10, 17호증”으로 고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8. 5.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반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안승훈, 판사 구태회